

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조정 기준을 국유 재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현행법과 상이하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, 점용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용료 조정 기준이 별표의 비고란에 명시되어 있어 비고란에서 삭제 후 구체적으로 징수 조례 조항에 명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점용료 등 조정기준 현행법에 따라 수정하여 조항으로 신설(안 제4조제2항)

-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나. 기존의 조정기준 삭제(안 별표 1. 비고 4호)

- 별표 1 비고 4호 내용을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 1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 2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 : 평창군 공고 2017-1373(2017.11.24.~12.14.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14756호/2017.11.24.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15682호/2017.12.18.)

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68149호/2017.11.22.)

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”를 “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“(점용료 등의 감면)”을“(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

구 분	산 정 기 준
<p>1. 공작물 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)</p>	<p>○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(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)를 곱한 금액의 3/100</p>
<p>2. 토지(소하천 등의 부지)의 점용</p>	<p>가.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<개정 2007.5.25></p> <p>나.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1995. 7. 6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다. 광업(골재채취 제외)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의 토지가격의 2.5/100. 다만, 소하천 등 구역내의 토석,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</p> <p>라.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0.75/ 100((소하천에 한함)</p> <p>마.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5/100</p> <p>바.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지 토지가격의 2.5/100</p> <p>사.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 용도의 인근지 토지가격의 1.5/100</p>

구 분	산 정 기 준
3. 소하천 부속물 점용	○ 제1호의 기준에 준한다
4. 유수의 점용	가. 전기사업 연액 m^3 /초당 200,000원 나.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다. 농업용수(내수면 어업용수 포함) 0.05~0.5 m^3 /초까지 연액 10,000원 0.5 m^3 /초 증가시 마다 10,000원 가산
5. 지하수 유수채취	○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.
6. 배수(주수)	가. 공업 용수 월 10,000 m^3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며, 월 10,000~200,000 m^3 까지 월액 20,000원, 월 1,000 m^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나.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해당될 때 다만, 농업용수와 배수(주수)는 제외한다. 월 10,000~200,000 m^3 까지 월액 15,000원, 월 1,000 m^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, 월 10,000 m^3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.
7. 토석, 사력의 채취	가. 소하천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사력 토매가격 평균치의 15/100 나. 가호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. 가호 및 나호의 조사는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년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한다.
8. 죽목, 갈대,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	○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,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.

구 분	산 정 기 준
9. 스케이트장, 유선장 (유선은 모선을 포함한다), 운동장, 풀장, 대기실, 탈의장 (매점 포함)	○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
10.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(소하천에 한함)	○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20. 다만,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
11. 전주 공중전화,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	○ [별표 2]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
12. 수도관, 하수도관, 가스관, 송유관, 전기공급관, 기타 이와 유사한 것	○ [별표 2]의 기준에 의거 산정된 금액
13. 기타의 점용료 및 사용	○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

※ 비고

1. 토지가격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. 다만,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.<개정 시행일자 기재>
2.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 1/12년으로 하고,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. 다만, 총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/365년으로 한다.
3. 삭제<2007.5.25>
4. 삭제<공포·시행일자 기재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징수조례</u></p> <p>제4조(점용료 등의 감면)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<u>의하여</u> 감면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</u></p> <p>제4조(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)</p> <p>① ----- 따 른 ----- ----- 따라 -----.</p> <p>② <u>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소하천정비법

제22조 (점용료 등의 징수)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(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, 토석·모래·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16.1.27] [시행일 2016.7.28]

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[개정 2016.1.27] [시행일 2016.7.28]

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·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 [개정 2016.1.27] [시행일 2016.7.28]

1. 공용·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,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,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31.] [시행일 2010.10.1.]

□ 국유재산법

제33조(사용료의 조정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인(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)이 같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·수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3.30., 2012.12.18.>

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나 점용료의 납부 대상인 행정재산이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□ 국유재산법 시행령

제31조(사용료의 조정) 법 제3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 <개정 2011.4.1.>

1.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(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: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

2.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(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):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
연락처	(033) 330 -2291